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·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,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함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
나.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을 받아 산업용지,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

제26조제8호 중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
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설로”를 “시설 외의 시설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.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제6조제6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
2. 제6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4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3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같은 업종의 시설 총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3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

별표 3 제3호나목 중 “1천제곱미터”를 “2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~ ④ (생 략)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. 1. ~ 11의2. (생 략) 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(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 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.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을 받아 산업용지, 공장건축물 및

	<u>그 밖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</u>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)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과 같다.	제26조(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<u>외국인투자기업</u>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	8.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 업</u> -----
제34조(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 위)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(이하 “도시형공 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34조(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 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.·나. (생 략) 다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	1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

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
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
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.
다만, 「물환경보전법 시
행령」 제33조제2호에 따
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
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
라. (생략)

2. (생략)

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
주) ① (생략)

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
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
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
호의 시설로 한다. 다만, 시장·
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
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
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
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
다.

1. 금융·보험·교육·의료·무
역·판매업(해당 지식산업센
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
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
다)을 하기 위한 시설

2. 물류시설, 그 밖에 입주기업

-----.

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33
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
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
라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
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
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
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
호의 시설 외의 시설로 ----.

<단서 삭제>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
분류 중 제6조제6항제1호 각
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
위한 시설

2. 제6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

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
집·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
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
활시설(면적제한이 있는 경우
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
시설만 해당한다)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
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
령으로 정하는 시설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7호다목에 따른 상점(음·식
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
하는 상점만 해당한다)으로서
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

가.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
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보
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
린이집(「영유아보육법」
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
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)이

에 해당하는 시설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
(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
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
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
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
다)

4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
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
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
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
시설

<삭 제>

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
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
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
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
한다)되어 그 용도로 유지
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
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
(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
경우에는 4천제곱미터) 이
하인 시설

나.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
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해
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
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
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
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
인 시설
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
(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
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
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
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
다)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
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

<삭 제>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같
은 업종의 시설 총 건축연면적

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
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
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
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
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
다. 다만, 같은 업종의 시설 총
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
분의 50(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
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
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
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)을
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
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
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
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. 다만,
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
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
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
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
된다.

1. 2. (생 략)

⑤ ⑥ (생 략)

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

① ~ ④ (생 략)
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

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
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
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-----

-----, <단서
삭제>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⑥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⑥ · ⑦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</u>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409